

낙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 변경 고시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업자의 의무사항과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 12. 02.

태 안 군 수

낙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 자원의 보호 등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 제2조제8호의 낙시어선업자 및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낙시어선업을 신고한 자(이하 “낙시어선업자”라 한다) 및 그 어선과 낙시어선의 승객에 적용한다.

제3조(영업시간) ①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이하 “낚시어선”이라 한다)의 영업시간은 하계(4. 1~10. 31) 04:00 ~ 20:00, 동계(11. 1~익년 3. 31) 05:00 ~19:00까지로 한다.

② **설치하지 않은 낚시어선 및 어선검사증서에 야간항행 금지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일출 30분전부터 일몰 30분후까지로 한다(일부 변경)**

제4조(운항횟수)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행위를 1일2회까지로 한다(단, 1회 낚시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하여 낚시승객이 낚시장소에 있을 경우 2회차 승객수는 1회와 2회 승객수를 합하여 승선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낚시어선업 행위는 당일 입·출항을 하여야하고 야영하면서 낚시어선업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단, 낚시터업 허가를 득하고 낚시터 관리선으로 사용하는 낚시어선은 예외로 한다

제5조(영업구역 등)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해사안전법, 원자력진흥법,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
2. 해상을 벗어난 구역
3. 서해특정해역에서 낚시객을 태우고 선상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태안 지역 낚시어선중 태안군내 유인도서 지역에서 승객을 승·하선시키는 경우는 제외)

②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외한 태안군 연안의 모든 도서, 갯바위 및 간출암에 낚시어선의 승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2.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외도
3.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내파수도
4.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궁시도

③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승객을 승선시켜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경우에는 그 승객이 당해 낚시장소에서 야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승객에 의하여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어선의 승객 준수사항) ① 낚시 승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에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선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낚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낚시어선업자(선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반하는 행위
3.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안전운항등에 방해를 하는 행위
4. 절벽과 위험한 갯바위 장소 등에 하선 또는 낚시를 하는 행위
5. 안전대피 또는 철수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승선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하며, 또한 영업제한구역에 하선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6.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7.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 관계법령에 규정한 포획금지 체장(체중) 이하의 물고기는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제7조(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장소에 안내한 때에는 당해 승객과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선주·선원 및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여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기상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한다.

②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영업통제구역에 출입해서는 아니 되며, 출입항 신고의 이행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 낚시어선업자는 반드시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를 갖추고, 출항전에는 기상상태 확인 및 항해·통신·기관·추진장치 등 각 설비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안전운항과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야 하며, 항해중에는 VHF 등 무선설비 및 V-Pass 등 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시켜야 한다.

④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낚시어선에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낚시어선 신고확인증 및 안전운항 준수사항 등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낚시터 주위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쓰레기 등을 무단투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 충돌, 좌초 기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고발생 보고 후 인명구조 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낚시승객들에게 구명조끼 등 구명장비 사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16. 12. 02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태안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준수사항 고시(태안군 고시 제2016-043)호는 폐지한다